

11. 대학원“개별지도연구(Individual Study)”과목 설치에 관한 내규

제정 : 1994. 3. 1.

개정(제2차) : 1998. 3.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장(수업) 제19조(수강과목)에 따라 “개별지도연구”과목을 설치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별지도연구”라 함은 학생이 전공에 관해서 지도교수로부터 개별적으로 과제를 지정받아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과목의 개설) “개별지도연구”는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

제4조(학점인정의 범위) “개별지도연구”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에서 각 6학점까지, 석·박사 통합과정에서는 8학점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가산할 수 있다.

제5조(학점단위) “개별지도연구”의 학점 단위는 2학점으로 한다.

제6조(학업평가) 과목성적의 평가는 그 등급을 A+, A0, A-, B+, B0, B-, C+, C0, C-, F로 한다.

제7조(개설과목 제한) 이 내규의 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는 학과별 허용과목수에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8조(책임시간) 이 내규에 의하여 과목을 담당한 시간은 책임시간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는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4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